

#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

– 하원 · 회수 · 월평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

\* \* 김 동 전

1. 머리말
2. 호적중초의 현황 및 편성체계
3. 호구의 변화와 호적 작성자
4. 住民의 存在形態
5. 성씨별 호주의 분포양상
6. 맷음말

# 1. 머리말

전근대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 3년마다 호적이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호적 작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에서 戶와 口를 대상으로 軍役 등의役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신분관계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sup>

조선시대 작성된 호적자료로는 戶口單子·准戶口·通籍·戶籍中草·戶籍臺帳 등이 있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해당 집안의 호구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신고서라 할 수 있다. 준호구는 호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관청에서 호적대장을 기초로 발급해 준 문서이다.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이다.<sup>2)</sup> 통적은 統을 단위로 작성된 호적으로 호적중초와 함께 마을에 보관되어 있었다.<sup>3)</sup> 호적중초는 마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그 각 기관에 보관하면서 모든 업무에 참고하였다.<sup>4)</sup> 호적대장은 호구기록에 관한 자료를 郡縣, 즉 제주도를 예로 들면 제주목·대정현·정의현 관청에서 각각 책으로 엮어 보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는 호구단자·준호구·통적·호적중초는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군현단위로 작성되었던 호적대장은 확인된 바가 없다.

호적중초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式年인 즉

\* 이 논문은 2000년도 제주대학교발전기금 학술연구비(지역사회발전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조선후기 호적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鄭杜熙, 「朝鮮後期 戶籍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 101, 한국사연구회, 1998;  
한영국, 「조선왕조 호적대장의 탐구」, 『한국사시민강좌』 24, 1999.

2)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1983.

3) 제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호적중초와 함께 통적이 같이 발견된다. 통적은 호적중초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호적중초에 비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가 1/2정도로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차후로 미룬다.

4) 제주지역의 호적중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金東栓,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子·卯·午·酉의 간지가 포함되는 연도의 정월을 기준으로 호적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그 前年 7월경부터 시작되었다. 호적이 작성되는 시기가 되면, 각 고을의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都監을 두고 본격적인 호적작성 업무를 시작해 나갔다.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마을의 厸正·監考·別有司·尊位는 각 집안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마을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이때 마을 단위로 작성된 호적을 호적중초라 하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와 각 집안에서 수합한 호구단자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빨간 글씨로 정정하고, 몇 통 몇 호를 각각 기입하여 수령의 手決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호적중초와 호구단자를 각 마을로 내려 보냈다. 각 마을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집안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군역이나 세금 징수에 활용하였다.

현재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옛 대정현 지역에 치중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정현이었던 지역의 호적중초로는 동성리, 자단리(지금의 덕수리), 금물로리(지금의 사계리), 중문리, 대포리, 도순리, 색달리, 하모리, 일과리 등이며, 이 외에도 각 마을마다 남아 있는 지역이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제주목 지역의 경우는 옛 도두리, 그리고 북제주군 장전리, 상가리, 중엄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정의현 지역은 현재 신풍리에서 1책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제주 지역의 각 마을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면 호적중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 이 글에서는 하원리, 회수리, 월평리 호적중초를 소개하고자 한다.<sup>5)</sup>

---

5) 하원리, 회수리, 월평리는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이는 마을로 조선 시대 당시에는 대정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후 中文面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은 서귀포시에 병합되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行政洞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원리, 회수리, 월평리로 명명한다.

## 2. 호적중초의 현황 및 편성체제

호적은 국가가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役 또는 貢物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호구의 상태를 조사·파악한 일종의 장부이다. 이러한 호적의 작성은 고대부터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그 형식이 체계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의해서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매 3년마다 호적을 개정하여 本曹·漢城府·本道·本邑에 간직한다. 서울과 지방은 5戶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둔다. 지방은 매 5통마다 里正을 두고 1面마다 勸農官을 두며(땅이 넓고 호가 많으면 헤아려 더 둔다). 서울은 매 1坊마다 管領을 둔다.<sup>6)</sup>

라 하여 국가에서는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호적은 戶曹, 漢城府, 해당 邑의 상급기관인 道, 그리고 해당 邑에 보관하였다. 또한 호적의 작성을 위해 지방의 경우, 5호를 1통으로 하여 統主, 매 5통마다 里正, 面에는 勸農官을 두었다. 통주는 통의 대표로서 통내의 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리정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리정은 리의 대표로 주된 업무는 통주를 관할하여 里內의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권농관 역시 면의 대표격으로 호구와 관련된 직무로는 面內의 호구파악이었다.

각 호에서는 호적작성의 기준이 되는 식년의 이전 해가 되면 호구단자 2통을 작성하여 통주에게 넘긴다. 통주에게 넘어온 호구단자는 리임·권농관을 거쳐 관에 이르게 된다.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1통의 호구단자는 호적을 다시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1통은 호주에게 돌려주었다. 호구단자 작성시의 호구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었다.

---

6) 『經國大典』 卷2, 戶典 戶籍條.

戶 아무 부, 아무 방, 아무 리(지방은 본주 본군이라 칭한다.) 住 아무관직 · 성명 · 년갑 · 본관 · 사조 처 아무씨 · 년령 · 본관 · 사조(종친은 자기 직함과 처의 사조를 기록한다. 의빈은 자기 직함 사조와 아무공주 옹주에게 장기간 것을 기록한다. 서인은 자기 및 처의 사조를 기록하되 서인으로서 사조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데리고 사는 자녀 아무개 아무개, 년갑(여기서는 모두 본관을 기록한다.) 노비 고공 아무개 아무개, 년갑<sup>7)</sup>)

그리고 각 호에서는 소송 등에 필요한 호적을 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관에서 발급하는 호적을 준호구라 하며,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아무 년월일. 본부(지방은 본주 본군이라 칭한다.) 그 해 성적한 호구장적을 보니 그 안에 아무 부, 아무방 운운. 노비 아무개 년갑 등이 장적에 준하여 발급함. 한성부(반드시 3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당상관 서명. 당하관 서명.(지방은 그 읍, 그 관직을 칭한다. 주 협개 몇 자를(없으면 「無」라 쓴다.) 빗겨쓰고 도장을 찍는다<sup>8)</sup>)

호구단자 작성시의 호구식은 別行으로 서술하였으나, 호주가 필요시 관아로부터 지급받는 준호구는 連書 즉, 계속 이어서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적제도의 본래 기능은 백성으로부터 역역과 부세를 수취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었으므로 백성의 처지에서는 호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 신분에 따른 역역과 부세의 부담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백성은 피역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적에의 편입을 기피하였다. 그것을 피하는 주된 방법은 도망, 호적상의 누락, 신분의 모정 등이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발전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종합적인 호적제도는 첫째, 호와 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수취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사회적 신분을 모정하는 것을 막으며, 넷째 가족 내에서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가족 내의

7) 위의 책, 권3, 예전, 호구식.

8) 위의 책, 권3 예전, 준호구식.

신분관계를 밝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기능을 위하여 호적제도는 그 뒤에도 계속 보완되면서 정교화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호적상의 누락, 나이의 증감, 신분의 모칭, 虛戶의 등록에 의하여 호적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대단히 문란하였다.<sup>9)</sup>

조선의 호적제도는 고종 31년(1894)의 갑오개혁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모든 국가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크게 개혁되었다. 호적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꿔 놓은 것은 1896년의 「戶口調查規則」과 「戶口調查細則」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호적제도는 그 이전에 비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났다. 즉, 戶主의 姓名 · 年 · 本 · 四祖 등의 기재는 舊制와 같았으나, 새로운 호적제도에서는 戸主의 本貫 · 姓氏 · 年甲 · 四祖의 기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본관과 성씨만 기재되었다. 그리고 舊制에서는 호주 외에 妻, 率居子女 · 奴婢 · 雇工을 호적에 기재하였으나 新制에서는 거주지 本位로 호적을 작성하고 부모, 형제, 자손이라도 分居하면 원칙적으로 分籍하고 同居하면 親居 · 寄口 · 雇傭도 入籍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호적의 작성을 매년 1월에 한성부의 5서와 각 州 · 郡 · 牧에서 하되, 分籍과 改籍은 수시로 하도록 하였으며, 호적의 내용에서는 봉건적인 신분 대신에 그 職과 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호적의 기재를 과거에는 일정한 양식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이후로는 인쇄된 용지의 각 난에 기입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규격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도 호적제를 作統制 및 호패제와 함께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작통은 5호에서 10호를 한 통으로 하였으나 통수의 소임은 이전과 대체로 같았다. 그러나 호패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구제도에서는 개인이 호패를 차도록 되었으나, 신제도에서는 개인이 아닌 戶를 단위로 하여 그 주소, 통호의 번호, 호주의 직업, 성명을 패에 기입하여 문 밖에 걸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9)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75.

## 1) 호적중초의 현존 현황

『牧民心書』에는 “中草란 草本이다. 이것이 臺帳에 비하여 좀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sup>10)</sup>라 하여 官에서 보관하던 호적보다는 마을에 보관하는 호적중초가 더욱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사료적 가치는 관에 보관되어 있던 호적대장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

작통은 일반적으로 煙家의 차례로 정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간에 1통 1호를 차지하려는 분쟁이 간혹 야기되기도 했다.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는 立議를 작성해 그 입의에 의해 준행토록 하였다.<sup>11)</sup>

河源·回水·月坪里 호적중초의 현존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 <표 1>, <표 2>, <표 3>이다.

<표 1> 하원리 호적중초의 현존 현황

연번	구분 식년	面數	보존 상태	관인 여부	호별 남여인구	內題	戶의 구분	중초상의 면리
1	1810년(가경15)	42	완전함	무	유	무	무	大靜縣 第1左面 第3下院里
2	1813년(가경18)	50	”	무	유	무	무	
3	1816년(가경21)	50	”	무	유	무	무	
4	1819년(가경24)	56	”	무	유	무	유	
5	1822년(도광2)	56	”	무	유	무	무	
6	1825년(도광5)	54	”	유	유	무	무	
7	1828년(도광8)	40	”	무	유	무	무	
8	1837년(도광17)	44	”	유	유	무	무	
9	1840년(도광20)	42	”	유	유	무	무	
10	1843년(도광23)	46	”	유	유	무	무	
11	1846년(도광29)	42	”	유	유	무	무	
12	1849년(도광29)	42	”	유	유	무	무	

10) 『牧民心書』戶典 六條, 第四條 戶籍條。

11) 현재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사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1897년(丁酉) 12월 일의 「立議」에 따르면, 작통에 의한 마을 주민간의 내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煙家順에 따라 統戶를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1852년(합풍2)	46	"	유	유	무	무
14	1861년(합풍5)	46	"	유	유	무	무
15	1858년(합풍8)	50	"	유	유	무	무
16	1861년(합풍11)	52	"	유	유	무	무
17	1867년(동치6)	60	"	유	유	무	무
18	1870년(동치9)	64	"	유	유	무	무
19	1873년(동치12)	56	"	유	유	무	무
20	1876년(광서2)	56	"	유	유	무	무
21	1879년(광서5)	62	"	유	유	무	무
22	1882년(광서8)	58	"	유	유	무	무
23	1885년(광서11)	58	"	유	유	무	무
24	1888년(광서14)	60	"	유	유	무	무
25	1891년(광서17)	54	"	유	유	무	무
26	1894년(광서20)	56	"	유	유	무	무
27	1898년(광무2)	58	"	유	유	무	무
28	1899년(광무3)	70	"	유	유	무	무
29	1901년(광무5)	60	"	유	유	무	무
30	1902년(광무6)	60	"	유	유	무	무
31	1903년(광무7)	60	"	유	유	무	무
32	1904년(광무 8)	60	"	유	유	무	무
33	1905년(광무 9)	68	"	유	유	무	무
34	1906년(광무 10)	68	"	유	유	무	무
35	1907년(융희 1)	68	"	유	유	무	무
36	1908년(융희 2)	68	"	유	유	무	무

大靜縣 第1左面  
第3河源里

대정현 제1좌면  
제5하원리  
1통=10호

하원리 호적중초는 총 36책이다.<sup>12)</sup> 즉, 1810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호적중초인데, 이 중에서 1831년, 1834년, 1864년, 1897년 호적중초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호적중초의 보존 상태는 모두 완전한 상태였으며, 관인은 몇 개 식년의 호적중초를 제외하고 모두 찍혀 있다. 모든 호적중초가 호별 남여 인구의 통계가 나타나 있으며, 각 戶를 官에서 大·中·小·殘戶로 구분해 놓은 호적중초는 1819년 호적중초 뿐이다. 호적중초 상에서 볼 때 하원리는 대정현 좌면 제3리에 해당하며, 마을 명칭이 下院에서 河源(1852년 이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서울대학교 규장각, 『濟州河源里戶籍中草』 1·2·3, 1992.

〈표 2〉 회수리 호적중초 현존 현황

연번	구분 식년	크기 (가로×세로)	面數	보존 상태	관인 여부	호별 남녀 입구	内題	戶의 구분	비고
1	1852년(합풍 2)	21.0×32.0	38	완전함	유	무	무	무	回水里
2	1855년(합풍 5)	22.0×33.0	42	"	"	"	"	"	回水里
3	1858년(합풍 8)	23.0×33.5	40	"	"	"	"	"	回水里
4	1861년(합풍 11)	22.0×36.0	38	"	"	"	"	"	新中文里를 回水里로 정정해서 고침
5	1864년(동치 3)	19.5×30.0	50	"	"	"	"	"	回水里
6	1867년(동치 6)	20.5×30.0	52	"	"	"	"	"	回水里
7	1870년(동치 9)	20.5×29.0	48	"	"	"	"	"	廻水里
8	1873년(동치 12)	19.5×33.0	46	"	"	"	"	"	표지 앞면에 『改名道 文里』 라 표기됨
9	1876년(광서 2)	22.0×32.0	46	"	"	"	"	"	道文里
10	1879년(광서 5)	21.5×31.0	38	"	"	"	"	"	道文里
11	1882년(광서 8)	21.0×32.0	48	"	"	"	"	"	道文里
12	1885년(광서 11)	21.5×32.0	48	"	"	"	"	"	道文里
13	1888년(광서 14)	20.0×29.5	48	"	"	"	"	"	道文里
14	1891년(광서 17)	19.0×28.0	52	"	"	"	"	"	道文里
15	1894년(광서 20)	20.5×29.5	52	"	"	"	"	"	道文里
16	1897년(광무 1)	19.0×29.0	48	"	"	"	"	"	道文里
17	1898년(광무 2)	20.5×33.0	28	"	"	"	"	"	道文里
18	1899년(광무 3)	20.5×30.0	48	"	"	"	"	"	道文里
19	1900년(광무 4)	22.0×32.0	40	"	"	"	"	"	道文里
20	1901년(광무 5)	19.5×32.0	42	"	"	"	"	"	道文里
21	1902년(광무 6)	19.5×32.0	40	"	"	"	"	"	道文里
22	1903년(광무 7)	19.5×32.0	40	"	"	"	"	"	廻水里
23	1904년(광무 8)	20.0×30.0	40	"	"	"	"	"	廻水里
24	1906년(광무 10)	20.5×30.0	36	"	"	"	"	"	廻水里
25	1907년(융희 1)	19.5×28.0	42	"	"	"	"	"	廻水里
26	1908년(융희 2)	19.0×32.5	42	"	"	"	"	"	廻水里

회수리의 호적중초는 총 26책으로 1852년 이후 1905년 호적중초만이 결본된 채 1908년까지 현존하고 있다. 회수리는 마을 명칭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즉, 回水里(1858-1867년) → 廻水里(1870년) → 道文里(1873~1902년; 1873

년 改名 道文里) → 遷水里(1903년 이후)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경우도 回水里로 되어 있는 것이 6책, 道文里로 된 것이 14책, 遷水里로 표기된 것이 6책이다.

회수리는 1849년 중문리 호적중초와 비교해 볼 때, 1852년에 행정적으로 중문리에서 分里되어 독자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1849년 중문리 호적중초에 기재된 사람들이 1952년 중문리 호적중초에서는 빠지고, 1952년 회수리 호적중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61년 회수리 호적중초에 의하면 마을에서 작성해서 관에 올린 호적중초는 新中文里라 되어 있으나, 이를 官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朱書로 回水里라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민들은 간혹 新中文里라는 마을 명칭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회수리 호적중초는 모두 완전한 상태로 마을회관에 보존되어 있다.

〈표 3〉 월평리 호적중초의 현존 현황

연번	구분 식년	크기 (가로×세로, cm)	面數	보존상태	관인 여부	호별 남여인구	내題	戶의 구분
1	1861년(합풍 11)	19.0×34.5	15	완전함	유	유	무	무
2	1864년(동치 3)	20.0×34.5	17	"	"	"	"	"
3	1867년(동치 6)	20.0×29.0	21	"	"	"	"	"
4	1891년(광서 17)	22.0×35.0	22	"	"	"	"	"
5	1894년(광서 20)	21.0×30.0	26	"	"	"	유	"
6	1897년(광무 1)	19.0×27.5	30	"	"	"	무	"
7	1898년(광무 2)	20.0×30.5	26	"	"	"	"	"
8	1899년(광무 3)	20.0×29.0	28	"	"	"	"	"
9	1900년(광무 4)	21.0×31.0	28	"	"	"	"	"
10	1901년(광무 5)	21.0×32.0	28	"	"	"	"	"
11	1902년(광무 6)	19.0×30.0	28	"	"	"	"	"
12	1903년(광무 7)	20.0×29.5	26	"	"	"	"	"
13	1904년(광무 8)	19.0×28.0	26	표지상실	"	"	"	"
14	1909년(융희 3)	16.0×24.0	50	완전함	"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월평리 호적중초는 모두 14책이다. 가장 오랜 것은 1861년의 호적중초이다. 그 이전의 호적중초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60년경 이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관상태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나, 1904년의 호적중초는 표지가 상실되어 있다. 모든 호적중초에는 각 면에 관인이 찍혀 있고 각 호별 남녀인구의 통계가 기재되었다. 각 호를 大·中·小·殘戶로 구분해 놓은 호적중초는 1책도 없다.

## 2) 편성체제

河源·回水·月坪里 호적중초의 편성체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표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年號 正月 日 干支(해당 식년의 간지)式 戶籍中草」라 쓰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을 표시하는 경우와 「年號 正月 日 里名 戶籍中草」라 쓰고 별행으로 해당 식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첫장 1행은 다시 표지의 내용을 기입하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의 面里를 표시한 후 五家作統法(1897년 이후는 十家作統法)에 의하여 1통, 2통의 순으로 기재해 나가고 있다. 기재형식은 호구단자와 같이 별행으로 이루어졌다. 作統은 煙家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같은 마을 내에 있어서도 1통 1호를 차지하기 위한 통간에 내분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호의 내용은 호주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부·조·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직역·성명·본관, 호주 처의 성씨와 나이, 본관 및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花妾, 奴婢, 雇工, 借入者가 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호마다 남녀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회수·하원리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回水里 : 1852年 1統 2戶

第二戶 掌議 梁學曾 年七十四 己亥 本濟州 父 留鄉別監通政大夫  
國梯 祖 留鄉別監  
聖來 曾祖 留鄉別監 進賢 外祖 學生 李世成 本古阜

妻 夫氏 年七十八 乙未 籍濟州 父 留鄉別監 道哲 祖 學生 行  
 仲 曾祖 留鄉別  
 監 萬雄 外祖 學生 金錫祚 本光州  
 率子 掌議 以濟 年五十四 己未  
 婦 姜氏 年五十九 甲寅 父 鄉貢進士 晚榮  
 孫子 幼學 折吉 年十一 壬寅  
 次子 幼學 承濟 年四十九 甲子  
 婦 吳氏 年四十七 丙寅 父 學生 光新  
 孫子 沖吉 年八 乙巳  
 次孫女 年五 戊申  
 生次孫子 淑吉 年二 辛亥  
 次子 幼學 永濟 年四十八 乙丑 十七口內  
 次婦 金氏 年四十八 乙丑 父 掌議 榮悅 男九  
 孫子 潤吉 年五 戊申 女八  
 次子 幼學 源濟 年三十四 己卯  
 婦 吳氏 年三十七 丙子 父 學生 仁顯  
 孫女 年五 戊申  
 庶母 姜召史 年八十三 庚寅 父 學生 嗣宗

十七口內  
 男九  
 女八

· 下院里 : 1810년 1統 2戶(私奴婢 소유의 예)

第二戶 前齊長 金運恢 年六十七 甲子 本光州 父 留鄉別監 最良 祖  
 學生 肅慶 曾祖  
 留鄉別監 亨雨 外祖 學生 金再鳴 本金寧  
 妻 高氏 年六十九 壬戌 籍濟州 父 留鄉別監 受擎 祖 學生 齊  
 乞 曾祖 學生  
 世武 外祖 留鄉座首 姜道鳴 本晉州  
 率子 留鄉別監 德圭 年四十五 丙戌  
 率婦 文氏 年五十一 庚辰 父 留鄉別監 道元

率孫女 年十八 癸丑  
 生曾孫子 高繼仁 年二 己巳 父 儒生 達連  
 次孫女 年十七 甲寅 人口 十七內  
 次孫女 年十三 戊午 男七  
 率孫子 益榮 年十 申酉 女十  
 率女 年二十三 戊申  
 率庶子 前將官 辰 二十五 丙午  
 率妾 任召史 年五十一 庚辰 父 書員 致盤  
 率庶孫女 年十七 甲寅  
 生庶孫子 貴榮 年二 己巳  
 率奴 次同 年十一 庚申 父 良人 取寶  
 率婢 十月 年五 丙寅 父 良人 吳命厚 母 同婢 池德  
 率婢 金月 年五十 辛巳 父 書員 道令 母 同婢 鄭德

人口 十七內  
 男七  
 女十

말미에는 元(原)戶, 인구와 남녀의 통계, 그리고 壯老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예외인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도망자 또는 표류자가 있을 때에도 이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참여하였던 历正과 監考는 성명을 기재하였고, 別有司와 尊位는 姓을 쓰고 手決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해당 관청 수령의 署押이 있다.

관에서는 일일이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冒錄·冒稱이 있는 경우, 일일이 朱書로 정정하고 후일에 있을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하여 각 면마다 관인을 일일이 찍어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冒錄·冒稱者들은 심한 경우·호적 관리자들과 결탁하여 일정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 놓은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 3. 호구의 변화와 호적 작성자

다음 <표 4>, <표 5>, <표 6>은 호구의 변화와 호적작성 관련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4〉 하원리 호적증초의 현황 및 호구<sup>13)</sup>

번호	년도	戶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10(순조 10)	50	267	125	142	5.34	姜(手決)	吳(手決)	張漢濟	尹貴泰
2	1813(순조 13)	50	273	129	144	5.46	吳(手決)	金(手決)	池漢仁	金德起
3	1816(순조 16)	53	288	133	155	5.43	李(手決)	高(手決)	趙廷旼	姜大孫
4	1819(순조 19)	52	302	143	159	5.81	文(手決)	姜(手決)	金德起	高興齊
5	1822(순조 22)	55	315	151	164	5.73	姜(手決)	金(手決)	姜致謙	金德期
6	1825(순조 25)	53	337	162	175	6.36	金(手決)	姜(手決)	姜致弘	許敏
7	1828(순조 28)	51	343	184	159	6.73	金(手決)	文(手決)	高興大	郭道仲
8	1837(현종 3)	55	430	195	235	7.82	金(手決)	金(手決)	元才弘	李廷恩
9	1840(현종 6)	54	389	180	209	7.20	金(手決)	姜(手決)	元才弘	郭道仲
10	1843(현종 9)	49	387	180	207	7.89	金(手決)	金(手決)	元才弘	池益信
11	1846(현종 12)	47	421	198	223	8.96	高(手決)	金(手決)	趙東六	池益信
12	1849(현종 15)	50	427	203	224	8.54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尹慶孝
13	1852(칠종 3)	48	425	192	233	8.85	金(手決)	金(手決)	姜用海	池益信
14	1855(칠종 6)	49	434	204	230	8.86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尹慶孝
15	1858(칠종 9)	49	459	214	245	9.37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趙井鑑
16	1861(칠종 12)	50	468	214	254	9.36	金(手決)	吳(手決)	姜營治	郭信九
17	1867(고종 4)	53	481	226	255	9.06	金(手決)	高(手決)	姜致緣	郭信貴
18	1870(고종 7)	55	495	219	276	9.00	金(手決)	金(手決)	姜營治	康信祿
19	1873(고종 10)	55	485	211	284	8.82	姜(手決)	吳(手決)	趙斗鑑	姜基太
20	1876(고종 13)	55	511	225	286	9.29	金(手決)	姜(手決)	池益煥	趙吉仁
21	1879(고종 16)	54	492	215	276	9.11	姜(手決)	金(手決)	康信祿	池希源
22	1882(고종 19)	53	483	214	274	9.11	金(手決)	金(手決)	康信祿	趙吉文
23	1885(고종 22)	57	491	216	274	8.61	金(手決)	姜(手決)	趙斗鑑	趙吉文
24	1888(고종 25)	62	503	222	281	8.11	金(手決)	姜(手決)	趙吉文	康信祿
25	1891(고종 28)	58	456	206	243	7.86	高(手決)	金(手決)	池昌昆	林昌國
26	1894(고종 31)	64	466	212	254	7.28	金(手決)	金(手決)	尹致元	康信祿

13) 1904년에서 1908년의 하원리 호적증초 자료의 내용은 도표에서 생략을 하였다.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27	1898(광무 2)	118	502	229	273	4.25	高(手決)	姜(手決)	康信祿	玄才千
28	1899(광무 3)	118	503	234	269	4.26	高(手決)	姜(手決)	姜命官	任昌國
29	1901(광무 5)	120	513	238	275	4.28	姜(手決)	吳(手決)	李才觀	任昌國
30	1902(광무 6)	120	513	238	275	4.28	姜(手決)	吳(手決)	姜永伯	玄才千
31	1903(광무 7)	120	513	238	275	4.28	姜(手決)	金(手決)	趙吉義	任昌國

1810년 당시 하원리의 호구는 50호에 267명으로 인근 중문리의 1/3에 해당하는 마을이었다. 그후 1894년까지 호수에 있어서는 큰변동이 없었으나, 인구는 큰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810년에 5.34에 해당하던 호당 평균 인구수가 1894년에는 7.28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1858년에는 호당 평균 인구수가 9.3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1898년 이후의 대폭적인 호수의 증가는 1896년 호적제도의 개혁에 의해 가옥당 한 호로 규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40여명의 인구만이 자연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원리는 100여 년 간 꾸준히 성장하여 1903년에 이르면 1810년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호당 인구의 전체 평균은 7.27명으로 월평리의 4.84명, 회수리의 6.77명에 비해 상당히 높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임원으로는 厘正 · 監考 · 別有司 · 尊位 등이 있다.

그러나 호적의 말미에 厘正 · 監考의 경우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別有司 · 尊位는 姓만을 쓰고 手決을 하였다. 다만 1822년 호적중초만이 리정 · 감고가 성명을 기입하고 수결을 하였다.

〈표 5〉 회수리 호구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크기 (가로×세로)	戶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52년 (철종 3)	21.0×32.0	51	388	191	197	7.60	李(手決)	李(手決)	宋興福	高鳳瑞
2	1855년 (철종 6)	22.0×33.0	46	363	180	183	7.89	金(手決)	李(手決)	宋興福	金光祿

번호	년도	크기 (가로×세로)	戸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3	1858년 (철종 9)	23.0×33.5	46	367	175	192	7.97	梁(手決)	金(手決)	金善良	金光祿
4	1861년 (철종 12)	22.0×36.0	51	392	182	210	7.68	姜(手決)	姜(手決)	姜濟福	李光哲
5	1864년 (고종 1)	19.5×30.0	53	412	195	217	7.77	李(手決)	金(手決)	柳宗良	?
6	1867년 (고종 4)	20.5×30.0	57	430	197	233	7.54	李(手決)	梁(手決)	高漢伯	金才良
7	1870년 (고종 7)	20.5×29.0	56	459	167	292	8.19	李(手決)	李(手決)	高漢伯	李光哲
8	1873년 (고종 10)	19.5×33.0	53	388	165	223	7.32	金(手決)	李(手決)	宋進齊	金信良
9	1876년 (고종 13)	22.0×32.0	52	375	164	211	7.21	李(手決)	李(手決)	梁明祿	康宗根
10	1879년 (고종 16)	21.5×31.0	54	384	169	215	7.11	姜(手決)	姜(手決)	宋進齊	金光仁
11	1882년 (고종 19)	21.0×32.0	56	386	167	219	6.89	姜(手決)	李(手決)	金信良	康宗根
12	1885년 (고종 22)	21.5×32.0	58	371	161	210	6.39	李(手決)	李(手決)	宋商權	康宗根
13	1888년 (고종 25)	20.0×29.5	60	378	173	205	6.30	李(手決)	金(手決)	金光秀	康宗根
14	1891년 (고종 28)	19.0×28.0	67	399	178	221	5.95	李(手決)	姜(手決)	宋進齊	康宗根
15	1894년 (고종 31)	20.5×29.5	67	402	194	208	6.00	李(手決)	金(手決)	金光秀	康宗根
16	1897년 (광무 1)	19.0×29.0	59	408	194	214	6.91	李(手決)	李(手決)	金信良	?
17	1898년 (광무 2)	20.5×33.0	48	328	155	173	6.83	金(手決)	李(手決)	金(手決)	周弘得
18	1899년 (광무 3)	20.5×30.0	49	329	154	175	6.71	李(手決)	李(手決)	金(手決)	康士得
19	1900년 (광무 4)	22.0×32.0	48	324	157	167	6.75	金(手決)	李(手決)	安(手決)	金宗福
20	1901년 (광무 5)	20.0×32.0	48	326	158	168	6.79	李(手決)	金(手決)	安(手決)	高濟得
21	1902년 (광무 6)	19.5×32.0	48	321	154	167	6.68	李(手決)	金(手決)	林(手決)	金宗福

번호	年度	크기 (가로×세로)	戶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22	1903년 (광무 7)	19.5×32.0	48	326	155	171	6.79	李(手決)	宋(手決)	池甲用	金宗福
23	1904년 (광무 8)	20.0×30.0	47	310	145	165	6.59	李(手決)	許(手決)	林世祿	金宗福
24	1906년 (광무 10)	20.5×30.0	47	312	146	166	6.63	姜(手決)	李(手決)	林世祿	金宗福
25	1907년 (융희 1)	19.5×28.0	85	312	146	166	3.67	池(手決)	李(手決)	池(手決)	金(手決)
26	1908년 (융희 2)	19.0×32.5	86	335	159	176	3.89	池(手決)	李(手決)	池(手決)	16金(手決)

위 <표 4>에 의하면, 1852년 회수리의 마을 규모는 51호에 388명으로 호수에 있어서는 하원리와 거의 비슷하나, 인구면에서 약 40여 명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회수리는 하원리에 비해 늦은 속도로 마을이 성장해 나가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山村이 갖는 일반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회수리 호적중초의 경우 1894년과 1897년의 호적중초를 비교했을 때 호수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변동없이 대대적인 호수의 증가는 1907년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896년 호적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회수리 경우는 몇 개의 가옥이 있다하더라도 한 올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한 호로 추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회수리의 호당 인구수의 전체 평균은 6.77명으로 월평리 4.84명 보다는 높으나, 하원리의 7.27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임원으로는 厘正·監考·別有司·尊位 등이 있다. 그러나 호적의 말미에 厘正·監考의 경우는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別有司·尊位는 姓만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그리고 1906년 호적중초 이후는 별유사 대신에 警民長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월평리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번호	년도	크기 (가로×세로)	戸	口	男	女	戶當平均 人口數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61 (철종 12)	19.0×34.5	16	113	44	69	7.06	李(手決)	姜(手決)	高漢珉	金振源
2	1864 (고종 1)	20.0×34.5	17	117	43	74	6.88	李(手決)	姜(手決)	李光禮	金振源
3	1867 (고종 4)	20.0×29.0	23	148	58	90	6.43	金(手決)	姜(手決)	高漢弼	趙斗鎮
4	1891 (고종 28)	22.0×35.0	20	120	49	78	6.00	李(手決)	姜(手決)	金恒官	姜明性
5	1894 (고종 31)	21.0×30.0	32	173	65	108	5.41	李(手決)	任(手決)	金致伯	黃才允
6	1897 (광무 1)	19.0×27.5	51	189	86	103	3.71	李(手決)	玄(手決)	金恒官	趙仁庄
7	1898 (광무 2)	20.0×30.5	49	188	84	104	3.84	金(手決)	吳(手決)	黃才允	黃才允
8	1899 (광무 3)	20.0×29.0	49	201	85	116	4.10	金(手決)	李(手決)	?	黃才允
9	1900 (광무 4)	21.0×31.0	48	200	87	113	4.17	金(手決)	李(手決)	金恒官	黃才允
10	1901 (광무 5)	21.0×32.0	48	201	88	113	4.19	李(手決)	姜(手決)	?	黃才允
11	1903 (광무 7)	19.0×30.0	48	201	88	113	4.19	李(手決)	金(手決)	金恒官	金恒官
12	1903 (광무 7)	20.0×29.5	46	200	88	112	4.35	姜(手決)	李(手決)	黃才允	黃才允
13	1904 (광무 8)	19.0×28.0	49	195	89	106	3.98	趙(手決)	吳(手決)	黃才允	黃才允
14	1909 (융희 3)	16.0×24.0	64	224	116	108	3.50			高振祿	呂昌文

1861년 당시 월평리의 규모는 16호에 인구 113명으로 작은 마을이었다. 그 후 월평리는 계속 성장하여 1894년에 32호에 173명, 1909년에는 인구가 224명으로 증가하였다.

호당 인구의 전체 평균은 4.84명으로 하원·회수리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마을 호적중초에서는 里長의 명칭이 보이는 데, 1909년 호적중초의 경우가 그것으로 별유사·존위가 사라지고 리장이 나

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마을 대표자를 의미하는 리장의 명칭은 1909년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住民의 存在形態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해명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호적상에 기록된 職役이다. 그러나 직역이 반드시 신분과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민의 존재형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호적상의 직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호적중초상에 나타난 직역을 통한 신분 분류는 보다 많은 사례의 검토가 요청되므로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일단 호주들의 직역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戶主의 職役別 분포

시기	1810년	1852년		1867년		1899년	
		마을명 직역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儒生	3	2	4	2	3		
幼學	1	6	2	5	8	1	1
留鄉別監	1	4	2	4	2	31	8
留鄉座首			2	3	1	4	11
鄉貢進士							
掌議		1	4	3	8	46	23
訓長						1	
忠翊衛	1						
司果		1		1			
品官		1	5	7	4	5	2
青衿						1	
校生		1	3		1	3	
院生					1		
祠生				1			
出身							
齊長	1				1		1

시기 마을명 직역	1810년		1852년		1867년		1899년	
	하원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武科初試				1				
業武	6		1					
閑良		1					2	
復戶							1	
自望							3	
老職通政大夫							1	
戶長				2			1	
記官		1						
執事	2		1	1				
作吏		1		2				
小童	1							
城將		3	2		5	2	1	
千摠			1			5		
把摠	1	1	6	3				
將官	5	7	4	4	2			
假率	2	6		6	8	4		
使令	1				1	1		
書員	8	2				1		
別將			1			2		
旗牌	4	2				1		
旗手						1		
鎮無		2	1					
防軍	1	1				2		
畜漢	4		4			3		
牧子	2							
氏							1	
召史	5	1					1	
名	1							
私奴			1					
其他	1	1	1	1	3			

위 <표 7>을 통해 우리는 하원·회수 마을 주민의 존재양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이의 이해를 돋기 위해 위 표에서 들어나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직역명으로 留鄉別監·留鄉座首·掌議·齋長·作吏·畜漢 등이 보인다. 유향좌수와 유향별감은 향청의 주요 직책이고, 장의와 재장은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제주도의 경

우 이들 직역이 양반임을 상징하는 직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어쩌면 그만큼 제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한 중앙관직 획득 가능성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서의 직책과 향직을 중요 여겨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리는 다른 지역의 假吏와 비슷한 성격의 직역으로 임시로 향리의 역을 수행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답한은 관둔전 경작자를 말한다. 부녀자의 호칭에 있어 중문리 호적중초와는 달리 父가 쓰인 사례는 위에 언급한 式年의 중초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氏·召吏·姓·女·父·名 등이 부녀자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19세기 후반에 제주도민의 주요한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掌議의 직역을 주로 冒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육지 지역이 18·19세기 신분상승의 방편으로 幼學을 모칭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었던 양상과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점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분과 관련하여 제주도 지방의 신분제는 1801년 공노비 혁파 이후 심한 혼효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반신분의 점차적인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지방 신분제 변화의 획기적인 계기는 1801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5. 성씨별 호주의 분포양상

〈표 8〉 호주의 성씨별 분포

시기	1810년	1852년		1867년		1899년	
성씨	마을명	하원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咸德康				1			
信川康						1	
晉州姜	10	12	8	13	11	35	6
濟州高	1	2	1	3	2	6	3
東萊郭	1			1			
善豐郭		1					

시기 마을명 성씨	1810년		1852년		1867년		1899년	
	하원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하원리	회수리	
慶州金		6	3	7	2	17	3	
光山金			1		2	9	1	
羅州金			2		5		2	
光州金	3	3	2	3	1		2	
金寧金	2				1			
金海金	1	1	6	3	8	5	2	
淸州金					1			
南平文		1		1				
牙山朴	1			1				
密陽朴	1	1		1		2		
原州邊							1	
濟州夫			1					
順興宋	1							
礪山宋		1		1		1	1	
沃溝宋	1		3		2	1	2	
順興安	4	2		2		2		
濟州梁	1	2	1	3	2	1	3	
和順吳		1		1		3		
海州吳	2	1		1		2		
軍威吳	1	3	1	1	1	5	1	
原州元		1	1	1		2		
文化柳	1	1	1		1			
坡平尹	1					1		
海南尹	1							
全州李		1		2		4		
完山李	2					1		
古阜李	1	1	8	2	10	4	18	
豊川任	2					2		
平澤林							1	
仁同張					1			
東萊鄭			1		1			
南原趙	2	1		1		2		
咸安趙	1	1		1		2		
忠州周							1	
忠州池	1		1	1	1	4	1	
淸州韓						1		
陽川許	2	2	2		1		1	
延州玄		2		2	2	1		
咸德玄	2							
南陽洪			1	1	1	2		
昌原黃	1	1	1	1	1	1		

첫째, 하원 마을은 晉州姜氏의 同族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세기 후반 이후 慶州金氏와 光山金氏가 이에 가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회수리의 경우 19세기 중반 古阜李氏, 晉州姜氏, 金海金氏 등이 대등한 同族 현상을 지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김해김씨는 거의 사라지고 고부 이씨가 압도적인 우위 속에 진주강씨가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 위의 2개 마을에는 100여 년 간 本貫을 달리하는 40여 개의 성씨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咸德·金寧 등 제주지방의 특정 마을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즉, 咸德康氏·金寧金氏·咸德玄氏가 그들 인데 이들은 아마 자신의 본관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합덕강씨는 신천강씨로 본관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김령김씨는 경주·광산·김해 등의 본관을, 합덕현씨는 19세기 초 延州玄氏로 본관이 변화되었다.

한편, 위의 모든 式年에서 오직 한번만 등장하는 姓氏로서 信川康氏·東萊郭氏·淸州金氏·原州邊氏·濟州夫氏·順興安氏·海南尹氏·平澤林氏·仁同張氏·忠州周氏·淸州韓氏 등이 있다.

## 6. 맷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하원·회수·월평 마을의 호적중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호적중초의 분석은 상당한 시간이 요청되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기초적 연구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하여간, 이를 자료는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

호적중초의 자료적 중요성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한 연구가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기족관계, 인구구성, 혼인관계 등이 주로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일정한 한

계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사회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기존 연구의 문제점도 지적될 것이다. 아무쪼록 제주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이 자료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 해가 다르게 소실되고 있는 호적중초들을 빨리 책자로 영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제주역사 및 한국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작업이며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이들 자료에 대한 자료의 전산화 작업도 철실히 요청된다.

[주제어] 호적중초, 직역, 하원리, 회수리, 월평리

## ■ 참고문헌

『月坪里戶籍中草』(월평마을회관 소장).

『河源里戶籍中草』(하원마을회관 소장).

『廻水里戶籍中草』(회수마을회관 소장).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景仁文化社, 1970.

『濟州大靜旌義邑誌』, 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 奎章閣圖書 10796.

李俊九,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一潮閣, 1993.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 출판부, 1975.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教學社, 1986.

金東栓, 「18·19세기 崑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歷史民俗學』 제3호, 한국역사민속

학회, 1993.

- \_\_\_\_\_, 「19세기 戶籍制 運營의 弊端과 對策-제주지방 호적관련 節目을 중심으로-」, 『濟州文化研究』, 玄旨金榮墩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編, 1993.
- 金東栓, 『18 · 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金錫禧, 「朝鮮王朝後期의 慶尙道 丹城縣 戸籍大帳에 對하여」, 『釜山大學校 文理大學論文集』14집(인문사회과학편), 1978.
- 金錫禧 · 朴容淑, 「朝鮮王朝後期의 慶尙道 丹城縣 戸籍大帳에 關하여(II)」, 『釜山大 文理大 論文集』 17집(인문사회과학편), 1978.
- 金錫禧, 「朝鮮後期 慶尙道 彦陽縣 戸籍大帳에 관하여」, 『釜大史學』7집, 1983.
- 朴容淑, 『朝鮮後期 鄉村社會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6.
- 은기수, 「조선후기 인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 『한국 사회의 신분 계급과 사회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8집, 1987.
- 全旻穆,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戸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研究』3, 1992.
- 崔承熙, 「戶口單子 · 淮戶口에 대하여」, 『奎章閣』7, 1983.
-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第1卷, 1973.
-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6, 1985.
-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大帳の 基礎的 研究 - 19世紀 慶尙道 鎮海縣の 戶籍臺帳につい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7.

# The Basic Study of *Hojukjungchos* in *Daejunghyun, Jeju Island*, in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Hojukjungchos* of *Hwawonri, Hoesuri* and *Wolpyongri*

Kim, Dong-Jun(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considered Jeju Island's Hojukjungchos in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nclude Hawonri's Hojukjungcho, Hoesuri's Hojukjungcho and Wolpyongri's Hojukjungcho. It has revealed their writing process, their organizations, their writers and the way of villagers' residence between 1810 and 1909. It has been confirmed in this paper that Hojuks(census registers) were made more thoroughly in Jeju areas than in other areas to strengthen collection from Jeju residents.

[Key Words] Hojukjungcho, Jikyok, Hwawonri, Hoesuri, Wolpyongri